

## < 정 오 표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트리플알파3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4.22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투자대상 변경(자산유동화증권 삭제)
- 과세에 관한 사항 보완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1. (생략) 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 3~10. (생략)	1. (현행과 동일) <삭제>  2~9. (현행과 동일)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1~2. (생략) 3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 4~9. (생략)	1~2. (현행과 동일) <삭제>  3~8. (현행과 동일)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	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내지 제8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
**[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- 자산유동화증권(40% 이하)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가. 투자대상 <삭제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나. 투자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	나. 투자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내지 제8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-	※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보완

**[간이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Ⅲ. [1] 과세	-	※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보완